

시멘트 · 콘크리트 관련 정책 및 법률 정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 공포

국토해양부가 지난 2월 22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 공포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6.9%)를 설정하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 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센터 지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및 에너지소비증명제 도입,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2년 중 마련)에 세부시행내용을 담아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녹색건축물 조성이 촉진되어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해 5년마다 국토해양부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녹색건축물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등 달성 목표 설정,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육성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이와 아울러 전기 · 가스 · 난방 등 건축물 에너지 · 온실가스 정보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 · 온실가스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건축 유도 및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실시하고, 녹색건축 관련 전문기관을 국가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여 녹색 건축물 조성 기술의 연구 · 개발 및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이 법안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에너지소비량 허용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설계 시 반영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설정 · 제한토록 했다.

이밖에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 시 건축물 매매 또는 임대 시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토록 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국토해양부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2012년 2월 23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탑상형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층벽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을 신설하였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다라도 동 기준에 의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점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에너지 절약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도록 하였다.

이와 아울러 급·배수, 소화배관의 단열항목 등 실효성이 없거나 점수취득이 용이하여 대부분 만점을 받는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는 대신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용도의 냉·난방에너지 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였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취득시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이 확대되어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건설공사 사후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후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결과 공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신기술을 설계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지침이 없어 적용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다른 공법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우수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향타·항발기 사용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발주청 등이 사고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향타·항발기 사용공사를 포함시켰다. 또한 건설현장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관련시설 설치·운영 비용은 이미 직접공사비로 반영하고 있어 환경관리비로 중복 반영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환경보전비 산출기준을 요율방식으로 단일화했다.

이 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라 지자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건설환경기본계획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 통합 수립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